

대전지방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단1016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전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, 이효상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16,732,083원과 그 중 15,214,299원에 대하여 2020. 8. 11.부터 2021. 12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2022. 4. 13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2. 체결된 매매계약을 19,196,3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 중 19,196,381원 부분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, 대한민국(소관: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)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원인 사실

1) 원고는 피고 A와 2017. 9. 14. 신용보증원금 15,000,000원, 신용보증기한 2018. 9. 13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

2)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,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확정손해금, 미수위약금,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3)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. 9. 14. C은행 용문역지점에 보증원금 15,000,000원, 보증기한 2018. 9. 13.,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, 보증번호 D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. 그 후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기한을 2020. 9. 11.로 변경하였다.

4)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7. 9. 14. C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15,000,000원을 대출받았으나, 2020. 4. 15.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,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20. 8. 11. 15,214,299원(원금 15,000,000원 + 이자 214,299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5) 원고는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 등에 1,612,540원(소제기 전 285,400원 + 소제기 후 1,327,140원)의 비용을 지출하였다. 그 후 미환급보증료 및 송달료 환급액 등 합계 94,756원을 충당하여 현재 대지급잔액금으로 1,517,784원이 남아 있다.

6)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20. 8. 11.부터 2021. 12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%이다.

[인정근거] 의제자백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나. 소결론

피고 A는 원고에게 16,732,083원(대위변제금 15,214,299원 + 대지급잔액금 1,517,784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,214,2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. 8. 11.부터 2021. 12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2. 4. 13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및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(이하 2.항에서는 피고라고만 적는다)에 대한 청구

1) 원고는 피고 A 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.

2) 피고 A 는 2020. 3. 2.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, 2020. 3. 18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.

3)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신청하여 2021. 6. 8. 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.

4)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186,605,000원에 낙찰되었는데, 2022. 2. 16. 경매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기하여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및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고 소유권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53,532,074 원이 배당되었으나 , 원고의 2022. 1. 27. 대전지방법원 2022 카합 50046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으로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되어 있다 .

[인정근거] 갑 제 1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 ,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,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. 3. 2.경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, 피고 A의 사업장인 'G공인중개사사무소'의 계속적인 영업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. 3. 30. 폐업한 후 2020. 4. 15.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

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피고 A가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, ② 피고는 피고 A에게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그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, 방법 및 액수 등(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)이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그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당시 피고 A의 재정적 상황을 보면,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, 피고는 한 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, 따라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1)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,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,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

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,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

2)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.

3)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53,532,07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들이 2020. 3. 2.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19,196,381원(변론 종결일인 2022. 4. 14. 기준 구상금 채권액)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피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 중 19,196,381원에 대하여 채권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한 후 대한민국(소관 :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김성대

【별 지】

제 1 목록
(부동산의 표시)

1. 【1동의 건물의 표시】

대전광역시 동구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대전광역시 동구

【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】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49.79㎡

【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】

토지의 표시 : 1. 대전광역시 동구 대 13582.4㎡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3582.4분의 22.43

-- 이 상 --

제 2 목록
(채권의 표시)

1. 위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통하여 피고 가 소외 대한민국(소관 :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의현금 출납공무원)에 대하여 가지는 53,532,074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.

-- 이 상 --

